

# 대학원혁신영역사업 관리운영지침

제정 2020. 12. 24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교육부 「4단계 BK21 대학원혁신영역사업(이하“혁신영역사업”」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항공과대학교(이하“본 대학”)에 설치하는 혁신영역사업 관련 제위원회 및 사업전담 조직의 운영과 혁신영역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혁신영역사업을 수행하는 본 대학 행정부서와 제위원회 및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**제3조(대학원혁신위원회)** ① 혁신영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원혁신위원회(이하 “혁신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교무위원급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부총장이 된다. 단,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2명 이내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.

1. 대학의 비전과 혁신영역사업 목표의 정합성 추진
2. 혁신영역사업 정책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
3. 사업비 집행 기준 수립 및 부적정 집행 대응
4. 사업비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
5. 그 밖의 혁신영역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심의

**제4조(대학원혁신사업팀)** ① 혁신영역사업의 운영을 위해 부총장 산하 혁신사업단을 두고 하부조직에 대학원혁신사업팀(이하 “사업팀”)을 둔다.

② 사업팀은 다음 각호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.

1. 사업의 총괄적인 수행·관리·지원
2.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별 예산 책정
3. 사업집행 및 성과지표 모니터링
4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
5.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와 확산
6.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, 재정적 제도의 정비
7.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보고, 연차·중간·종합보고서 작성
8. 기타 혁신영역사업 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

**제5조(대학원혁신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)** ① 혁신영역사업 사업운영부서 간 원활한 사업관리 추진을 위해 대학원혁신사업팀 운영자문위원회(이하 “운영자문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며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운영자문위원 구성은 당해연도 사업추진부서의 부서장 및 사업관리조직의 예산관리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추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.

⑤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 업무 기반의 사업추진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혁신지원사업 추진부서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정책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설정 및 실행, 전략에 관한 사항
3. 기타 혁신영역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문제 사항 논의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
**제6조(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협의회)** ① 4단계 BK21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대학원혁신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해 참여 교육연구단장으로 구성된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협의회(이하 “교육연구단 협의회”)를 조직하며 교육연구단 실무자협의회(이하 “실무자협의회”)를 산하에 둘 수 있다.

② 교육연구단 협의회 회장은 참여 교육연구단장 중 1명을 대학원혁신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당해연도 교육연구단장은 모두 당연직으로 한다. 교육연구단 협의회 간사는 교육연구단 협의회 회장으로 임명된 교육연구단에서 맡으며 실무자협의회 회장은 실무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③ 교육연구단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4단계 BK21 성과 창출 및 성과공유를 통한 교육연구단 발전방향 모색
2. 혁신영역사업과 교육연구단 사업의 정합성 유지 및 연계
3.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정책 및 혁신영역사업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
4. 기타 교육연구단 문제점 및 애로사항 협의

④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4단계 BK21 사업 규정 및 업무 처리 기준 등 공유
2. 교육연구단 운영 및 업무성과 상호 교류
3. 교육연구단 협의회 회의 내용 공유 및 지원
4. 기타 4단계 BK21 사업 이슈 사항 논의 및 애로사항 의견 수렴

**제7조(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)** ① 혁신영역사업의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는 기획처 기획예산팀과 산학협력단 운영지원센터 재무회계팀이 수행한다.

② 사업비 점검 및 관리체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.

1. 사업추진부서와 사업비 관리부서의 분리

2.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
3. 교비회계 내 별도 계정으로 관리

**제8조(사업비 변경)** ① 혁신영역사업의 모든 사업비는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, 집행 방법 및 사업비 변경에 관한 세부 사항은 「4단계 BK21 규정 및 대학원혁신영역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 따른다.

② 「4단계 BK21 규정 및 대학원혁신영역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」에서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대학의 예산 및 회계관리 기준, 혁신위원회에서 정한 대학 자체 기준을 준용한다.

**제9조(성과평가)** ① 혁신영역사업의 사업추진 성과는 내부 모니터링 및 자체평가를 통해 평가한다.

② 혁신영역사업의 성과점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평가(컨설팅 자문 포함)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10조(모니터링)** ① 사업팀은 사업추진(수행)부서가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.

②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관리 부서는 사업비 집행의 합목적성을 수시로 모니터링 한다.

③ 모니터링 결과 사업비 부적정 집행 사례가 발견될 경우, 혁신위원회에 즉각 보고한다.

**제11조(자체평가)** ① 혁신영역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(이하 “평가위원회”)를 둔다.

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학내 전임교원으로 임명한다. 단, 자체평가의 투명성·민주성 확보를 위해 학교 경영에 필요한 외부전문가, 직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구성하되, 재학생의 경우 당해연도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.

1.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정기·수시 평가 실시
2. 사업별 성과지표 목표값 달성도 점검
3. 세부 사업별 달성도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자문
4. 사업성과지표 점검 및 설정
5. 평가결과에 기반한 환류체계 구축
6. 사업의 효과성, 사업성과 창출 요소 발굴 및 확산
7. 기타 혁신영역사업 자체평가와 관련된 중요 사항

**제12조(세부사항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, 사업운영에 필

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지침은 2020년 12월 24일 부터 제정, 시행한다.